



제342회 정례회

2015. 9. 2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박한범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8월 24일
-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및 관계 법령의 제명변경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및 시험·검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「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」
→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
[시행 2015.1.16.] [총리령 제1135호, 2015.1.16., 일부개정]
 - 식품의약품안전청장 → 식품의약품안전처장
- 나. 수수료의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한 납부 규정 명시(안 제3조제5항)
- 다. 시험성적서 발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명시(안 제4조제3항)
- 라. 검사시험 등 불응 시 의뢰인에게 사유 통지 규정 명시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및 시험·검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명칭을 수정하고, 수수료 납부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규정을 명시하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3조에서 「정부조직법」 개정 및 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,
 -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→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
 -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(별도 명기) 하였으며,
 - 동 조 제5항에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 - 안 제4조3항에 시험성적서 우편발송 원칙을 명시하고,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발급토록 규정함.
 - 안 제6조에 검사·시험 등 불응 시 원장이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토록 규정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개정된 것이며,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용어 및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법리적,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